

제 542 호

1976.2.24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편집장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규 칙	
제 1558 호 :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	3
◎ 고 시	
제 35 호 :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	4
제 36 호 : 서울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	4
◎ 공 고	
제 41 호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실시계획공람공고	5
제 42 호 :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 및 취소공고	10
제 43 호 :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에정지지정변경공고	10
◎ 예 규	
제 319 호 :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번호규정	11
◎ 사 령	22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330

0373

규 칙

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
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

1976년 2월 24 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558 호

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사무
처리규정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
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5. 제 2 종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
시험중 법제 58 조제 1 항제 3 호의
사항은 구술시험으로 하여 10 분
개이상을 별지제 21 호서식에 의
하여 출제하여야 한다.

별지제 21 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[별지제 21 호서식]

원동기장치자전차운전면허시험 실문서

접수번호		성명	
실문내용 (도로교통법)	응답 (○×표시)	실문내용 (도로교통법)	응답 (○×표시)
1		11	
2		12	
3		13	
4		14	
5		15	
6		16	
7		17	
8		18	
9		19	
10		20	
100점만점 (1문당 5점)	득점	점	시험관
		서울특별시경찰국교통과 경 (인)	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5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6 호 (74.4.12) 로 시설결정및 지적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용 도시계획법 제 24조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(73.4.4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2.26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 5가 126, 137의 2
- 2. 사업종류및 명칭 : 학교시설사업 (고려대학교)
- 3. 면적및규모 : 5,595㎡
- 4. 시행자주소및성명 : 성북구안암동 5가 1번지,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

이사장 이 활

- 5.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
 - 가. 착수년월일 : 76.2
 - 나. 준공예정일 : 76.5.31
 - 6. 위치및계획명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
 - 7. 공사설계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
- ※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성북구청에 보관함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6 호

서울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

- 1. 건설부고시제 2493 호 (66.6.21) 및 제 198 호 (71.4.7)로 변경결정된 당시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(73.4.4)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(시민봉사실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2. .

서울특별시장

가. 노선조서 (지적승인조서)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복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대로	3	30	25	4.380	성산동	수색동	
변경	대로	3	30	25	6.750	성산동	수색동	성산동 94-1 에서 300-5 간 90m 지적승인
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공 고</div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 랑 개 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상위치 : 강남구 남원동 - 봉산구 서빙고동 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반포 감수교 가설공사 3. 사업의 규모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B = 18m 강남지하차도 180m 나. L = 795m 강북지하차도 215m 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 5. 사업착수및준공예정 : 1975.10.10-1977.6.30 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토지조서 7. 토지또는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주소 성명
--	---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1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실시계획
공 랑 공 고

1. 건설부고시제 8 호 (76.1.21) 로 고시된 반포장수교가설 공사구간내 의 대측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제 25 조 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 에 공한다.
2. 관계도서는 건설국 도로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2. .

서울특별시청

토 지 조 서 (반포측)

지 번	지 목	지 적	편 입 지 적	소 유 자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
58	대지	51	19	서 빙 고 등	연 재 석	22
54	//	73	60	//	이 송 찬	23
55	//	32	21	//	이 하 금	24
57-1	//	92	53	//	김 정 용	25
56-1	//	13	13	//	//	26
65-1	//	47	47	//	//	27
64	//	25	6	//	강 수 진	28
65-4	//	5	3	//	//	29
65-13	//	15	15	//	//	30
66	//	50	10	//	//	31
72	//	15	75	//	이 부 덕	32
71	//	103	44	//	//	33
73-1	//	40	40	//	//	34
73-2	//	17	15	//	백 오 천	35
74	//	20	8	//	이 기 태	36
96	//	20	20	//	//	37
75	//	24	22	//	이 영 성	38
78	//	48	4	//	김 국 진	39
79	//	39	4	//	이 철 우	40
80	//	24	4	//	이 국 진	41
81	//	24	6	//	신 금 순	42

지 번	지 목	지적	면적	소 유 자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
82	대 지	21	21	서 방 고 동	김 점 수	43
167	〃	37	33	〃	오 역 석	44
166	〃	42	42	〃	백 영 조	45
156-2	〃	14	10	〃	이 신 래	46
156-1	〃	83	83	〃	김 두 호	47
16-1	〃	39	39	〃	〃	48
162-1	〃	61	61	〃	이 길 선	49
162-2	〃	62	62	〃	김수이 외 1	50
161	〃	67	67	〃	〃	51
160	〃	180	111	보 광 동 217-13	김 두 천	52
159	〃	124	28	〃	〃	53
158	〃	178	81	서 방 고 동	김 기 난	54
157-1	〃	69	30	〃	〃	55
174-1	〃	29	20	〃	〃	56
157-2	〃	23	23	한 강 로 3 가 65-36	박 수 근	57
154-2	〃	33	39	〃	〃	58
152-1	〃	51	46	종 로 구 남 산 동 2 가 3-7	강 관 천	59
153-2	〃	80	20	성 동 구 332-2	〃	60
152-4	〃	61	61	〃	〃	61
152-3	〃	62	62	〃	〃	62
152-2	〃	41	41	한 강 로 1 가 280	홍수옥 외 1	63
273-52	〃	393.7	273.2	용 산 구 후 암 동 621	조 성 주	1
273-53	〃	323	255.2	강 남 구 반 포 동 542	박 수 안	2

26-8 제 542 호

시

보 1976.2.24

지 번	지 목	지 적	편 입 지 적	소 유 자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
273-85	대 지	255.8	41.3	종로구 종로 6 가 32-1	이 진 욱	3
273-57	#	543.5	44.4	성북구 수유동 130-64	김 현 수	4
273-79	#	481.0	147.8	강남구 반포동 542	박 수 안	5
271-26	#	370.5	140	성북구 정농동 71	배 경 후	6
271-39	#	451.2	238.5	강남구 반포동 536	방 대 윤	7
271-27	#	841.4	454.9	#	#	8
264-4	#	691.3	296.7	동대문구 전농동 359-14	김 영 조	9
264-17	#	727.8	151	강남구 반포동 264	김 영 재	10
채비지	#	186.9	77.7		서 울 시	11
264-5	#	211	74.3	종로구 목동 2 가 82-2	김 한 중	12
반포측계			2,195			
토 지 조 서 (서빙고측)						
지 번	지 목	지 적	편 입 지 적	소 유 자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
10	대 지	3,428	644	용산동 4 가	국 유 지	1
19-1	#	50,013	2,722	#	#	2
302-5	잡 종	23	23	#	#	3
302-3	#	105	40	#	#	4
7	대 지	569	320	동 빙 고 동	#	5
7-2	#	6,276	25	#	#	6
7-23	#	2,352	180	#	#	7
1-1	#	285	113	서 빙 고 동	#	8
1-2	#	32	12	#	#	9

지 번	지 목	지 적	편입지적	소 유 자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
1-7	대 지	38	30	서·빙 고 동	유 연 식	10
1-8	"	31	23	"	강 병 구	11
1-9	"	52	52	"	이 명 희	12
1-10	"	6	6	"	국 유 지	13
1-11	"	8	8	"	"	14
50-3	"	56	56	"	서 단 성	15
52-7	"	72	72	"	윤 각 중	16
52-6	"	36	3	"	안 언 선	17
53-1	"	48	54	"	안 단 만	18
53-2	"	5	2	"	황 모 천	19
52-8	"	41	7	"	황 은 봉	20
52-13	"	30	8	"	황 수 산	21
152-5	대 지	53	53	한강로 1가280	홍 수 옥 외 1인	64
241-30	대	81	81	동대 문구 전농동	민 병 성	65
241-56	"	95	95	"	"	66
서빙묘추지			6,098		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2 호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
지정업체지정및취소공고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
지정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3조

제 4 조 및 제 6 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76. 2.

서울특별시 장

1. 지정업체

지정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76년도 수출목표액	비고
504	해창출산(주)	김치만	성북정농동 383-41	세타	총 1,100,000	

2. 지정취소업체

지정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취소사유
1207	키무역상사(주)	김희광	강남마천동 206	세타	보고불이행
1208	두진실업공업사	정영진	천호동 454-23	완구	등록취소
1209	유나통상(주)	신찬문	암사동 520-25	세타	보고불이행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3 호

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
환지에정지지정현경공고

1. 서울특별시 신림, 신림추가, 역촌,
시흥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
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져
서울특별시 공고 제 16 호 (76.1.30)

로 공람 공고 한바있는 토지에
대하여 환지변경계획을 확정하고
환지에정지 지정을 별첨조서 및
도면과 같이 지정하였기 토지구
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제
56 조와 해당지구 구획정리사업
시행 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의
하여 이를 공고한다.

2. 환지에정지가 변경 지정된 토지의
 사용수익을 공고일로 부터 토기소유
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.
 다만, 정지공사 미완료 또는 다른
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수익할
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미완료
 및 다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
 사용수익을 하게한다.

3. 환지에정지 지성서 및 도면을
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와
 관악구청 및 출장소에 각각 비치
 하고 토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
 보이게 한다.

첨부: 환지에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:
 별첨 (생략-서울특별시 도시정비
 국 도시정비과와 관할구청 및
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)

1976년 2월 27일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
예 규

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
 번호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76년 3월 1일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
○서울특별시에규제 319 호

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
 수신처번호 규정

1.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
 수신처 번호를 별표와 같이 한다.

2. 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
 부터 시행한다.

3. 서울특별시 예규 제 308 호로
 제정된 기관기호 및 수신처
 번호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
 동시에 폐지한다.

〈별표〉						
기관기호및수신처번호						
기	관	명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	고
시	장	실		서 실 1		
제 1	부	시 장 실		" 2		
제 2		"		" 3	서실 1~4	
문	화	공 보 실	공 보	" 4		
기	획	관 리 관		서 관 1		
비	상	계 획 관		" 2	서관 1~3	
감	사	관		" 3		
내	무	국		서 국 1		
제	무	국		" 2		
보	건	사 회		" 3		
환	경	국		" 4		
산	업	국		" 5		
녹	지	국		" 6		
민	방	위		" 7		
경	관	국		" 8		
소	방	부		" 9		
도	시	정 비		" 10		
주	관	국		" 11		
관	광	운 수		" 12		
전	설	국		" 13		
수	도	국		" 14		

기	관	경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	고
기획 관리관	기획담당관	·	기획서과	1		
	예산·	·	예산·	2		
	법무·	·	법무·	3		
	통계·	·	통계·	4		
	시정개발·	·	시정·	5		
비상계획관	비상계획보좌관	·	비계·	6		
감사관	감사담당관	·	감사·	7		
	순찰담당관	·	순찰·	8		
내무국	총무과	·	총무·	9		
	인사과	·	인사·	10		
	행정과	·	행정·	11		
	시민과	·	시민·	12		
	새마을지도과	·	새지·	13		
재무국	세정과	·	세정·	14		
	세무조사과	·	세조·	15		
	회계과	·	회계·	16		
	관재과	·	관재·	17		
	영선과	·	영선·	18		
보건 사회국	보건행정과	·	보건·	19		
	보건예방과	·	보예·	20		
	의약과	·	의약·	21		
	사회복지과	·	사회·	22		
	부녀아동과	·	부녀·	23		
	아동과	·	아동·	24		

기	관	명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	고		
환경국	청	소 1	과	청	일	서	과 25	
	청	소 2	과	청	이	"	26	
	환	경	과	환	경	"	27	
산업국	상	정	과	상	정	"	28	
	공	업	과	공	업	"	29	
	연	료	과	연	료	"	30	
	도	시	가	스	과	도	가	31
	농	축	국	농	축	"	32	
농지국	양	정	과	양	정	"	33	
	조	경	과	조	경	"	34	
	녹	지	과	녹	지	"	35	
민방위국	공	원	과	공	원	"	36	
	민	방	위	민	방	위	"	37
도시 정비국	운	영	과	운	영	"	38	
	도	시	행	정	과	도	행	39
	도	시	계	회	과	도	계	40
	도	시	경	비	과	도	경	41
	구	획	정	리	과	구	정	42
주택국	건	축	지	도	과	건	축	43
	주	택	행	적	과	주	행	44
	주	택	관	리	과	주	관	45
	주	택	정	비	과	주	정	46
	주	택	개	량	과	주	개	47

기	관	명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	고
관 광 안수국	운 수	1 과	운 일	서 과 48		
	"	2 과	운 이	" 49		
	"	3 과	운 삼	" 50		
	관 광	과	관 광	" 51		
건설국	진 설	행 경 과	진 행	" 52		
	시 설	관 리 과	시 관	" 53		
	도 로	시 설 과	도 시	" 54		
	도 로	보 수 과	도 보	" 55		
	하 수	과	하 수	" 56		
	치 수	과	치 수	" 57		
수도국	업 무	과	업 무	" 58		
	경 리	과	경 리	" 59		
	기 전	과	기 전	" 60		
	수 원	과	수 원	" 61		
	급 수	과	급 수	" 62		
	시 설	과	시 설	" 63		

기	관	명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	고
소방본부	소 방 행 정 과	소 행	서 과	64		
	방 호 과	방 호	" "	65		
	지 도 과	지 도	" "	66		
경찰국	경 무 과	경 무	" "	67		
	보 안 과	보 안	" "	68		
	교 통 과	교 통	" "	69		
	경 비 과	경 비	" "	70		
	작 전 과	작 전	" "	71		
	통 신 과	통 신	" "	72		
	수 사 과	수 사	" "	73		
	형 사 과	형 사	" "	74		
	정 보 과	정 보	" "	75		
	의 사 과	의 사	" "	76		
구 청	중 로		서 청	1		
	중 구		" "	2		

기	관	명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	고	
구 청	동	대	문	서 청	3		
	성		동	"	4		
	성		북	"	5		
	도		봉	"	6		
	서	대	문	"	7		
	마		포	"	8		
	용		산	"	9		
	영	등	포	"	10		
	관		악	"	11		
	강		남	"	12		
	출 장소	은		평	서 출	1	
		천		호	"	2	
양			서	"	3		
직속기관	지 하 철 본 부		지 철	지 철	1		
	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		서 교	서 교	1		

기	관	명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	고	
직속기관	서울산업대학	산	대	서	산	1	
		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	서	농	서	농	1
		서울특별시노동위원회사무국	서	노	서	노	1
경찰서	중	부	중	경	서	경	1
	중	로	중	경	"	"	2
	남	대	남	경	"	"	3
	서	대	서	경	"	"	4
	동	대	동	경	"	"	5
	용	산	용	경	"	"	6
	성	북	성	북	경	"	7
	청	량	청	경	"	"	8
	마	포	마	경	"	"	9
	영	등	영	경	"	"	10
	성	동	성	동	경	"	11
	노	량	노	경	"	"	12
	동	부	동	부	경	"	13
	서	부	서	부	경	"	14
	북	부	북	부	경	"	15
	남	부	남	부	경	"	16
	태	등	태	경	"	"	17

서경 1-17

기 관 명		기 관 기 호	수 신 처 번 호	비 고
소 방 서	중 부	중 소	서 소 1	서 소 1 - 6
	용 산	용 소	" 2	
	성 동	성 소	" 3	
	영 등 포	영 소	" 4	
	복 부	복 서	" 5	
	서 부	서 소	" 6	
공 보 실	시 민 회 관	시 회	서 사 1	
	시 립 교 향 악 단	교 향	" 2	
	시 립 국 악 관 현 악 단	국 악	" 3	
비 상 계 획 관	한 강 안 전 관 리 대	한 관	" 4	
내 무 국	시 립 운 동 장	운 동	" 5	
보 진 소	중 로 구 보 진 소	중 보	" 6	
	중 구 보 진 소	중 보	" 7	
	동 대 문 구 보 진 소	동 보	" 8	
	성 동 구 보 진 소	성 동 보	" 9	
	성 북 구 보 진 소	성 북 보	10	
	도 봉 구 보 진 소	도 보	" 11	
	서 대 문 구 보 진 소	서 보	" 12	
	마 포 구 보 진 소	마 보	" 13	
	용 산 구 보 진 소	용 보	" 14	
	영 등 포 구 보 진 소	영 보	" 15	
	관 악 구 보 진 소	관 보	" 16	
강 남 구 보 진 소	강 보	" 17		

기	관	명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	고					
보 건 사 회 국	위	생	연	구	소	위	생	서	사	18	
	장		제		장	장	제	"		19	
	묘	지	관	리	사무	묘	지	"		20	
	동	부	병		원	동	병	"		21	
	영	등	포		원	영	병	"		22	
	중	부	병		원	중	병	"		23	
	남	부	병		원	남	병	"		24	
	아	동	병		원	아	병	"		25	
	정	신	병		원	정	병	"		26	
	서	대	문	병	원	서	병	"		27	
	양		로		원	양	로	"		28	
	경		생		원	경	생	"		29	
	부	녀	사	업	관	부	사	"		30	
	동	부	여	자	기	술	동	부	"	31	
	남	부	녀	보	호	지	남	부	"	32	
소	년	기	술	원	소	기	"		33		
소	녀	직	업	전	도	소	직	"	34		
아	동	상	담	소	이	상	"		35		
환경국	자	동	차	정	비	자	정	"		36	
	서	부	위	생	처	서	위	"		37	
	북	부	위	생	처	북	위	"		38	
산업국	연	로	시	험	소	연	시	"		39	
	도	시	가	스	사	도	가	"		40	
	축	산	물	위	생	축	물	"		41	
녹지국	북	부	녹	지	사	북	부	"		42	

기	관	명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	고
농지국	남부농지사업소	남	농	· 서사 43		
	양묘장	양	묘	· " 44		
	어린이대공원	어	공	· " 45		
	남산공원관리사무소	남	공	· " 46		
주택국	주택건설사업소	주	건	· " 47		
건설국	중기관리사업소	중	관	· " 48		
	동부건설사업소	동	건	· " 49		
	남부건설사업소	남	건	· " 50		
	서부건설사업소	서	건	· " 51		
	역청사업소	역	청	· " 52		
	토목시험소	토	지	· " 53		
수도국	수도관리사업소	수	관	· " 54		
	보광동수원지	보	수	· " 55		
	죽도수원지	죽	수	· " 56		
	노량진수원지	노	수	· " 57		
	구외리수원지	구	수	· " 58		
	영등포수원지	영	수	· " 59		
	대천산배수지사업소	대	배	· " 60		
	만리동배수지사업소	만	배	· " 61		
	불광동보조수원지사업소	불	보	· " 62		

사 령

◎ 76. 2.21

공무원 교육원 교수부 행정사무관 신 백 식

주택국 주택관리과장 직무대리를 명함.

주택국 단속과장 지방서기관 조 남 호

주택국 주택정비과장 직무대리를 명함.

산업국 양정 과장 서기관 김 수 철

관광운수국 운수 1과장에 포함.

주택국 개량 1과장 서기관 권 이 공

산업국 양정과장에 포함.

주택국 개량 2과장 토목기정 이 후 철

주택국 주택개량과장에 포함.

◎ 76. 2.23

개량 2과 지방토목과 최 중 균

주택개량과 개량 1제장에 포함.

개량 2과 지방토목과 이 창 대

주택개량과 개량 2제장에 포함.

개량 1과 지방토목과 김 주 한

주택개량과 단지조성제장에 포함.

단속과 지방토목과 김 광 개

주택정비과 항축계장 직무대리를 명함.

단속과 지방토목과 조 규 전

주택정비과 근무를 명함.

농정과 지방축산과 박 인 근

농축과 축산계장에 포함.

농정과 지방축산과 황 인 옥

농축과 가축위생계장에 포함.

성동구 지방건축과 김 창 배

강남구 근무를 명함

강남구 지방건축과 정 연 문

성동구 근무를 명함

시정개발담당관 지방행정 한 봉 우

전자재산계장 사무관

통제담당관 자료처리계장에 포함.

보건의방과 지방행정 하 영 기

외약과 마약계장에 포함.

농정과 지방행정 황 호 완

농축과 농수산계장에 포함.

주택행정과 지방행정 강 성 환

주택관리계장 사무관

주택행정과 기획계장에 포함.

주택행정과 용지계장 김 진 수

주택행정과 용지계장에 포함.

단속과 지방행정 유 지 철

지도계장 사무관

주택관리과 주택관리계장에 포함.

<p>주방행정과 지방행정 이 민 우 용지 2계장 주 사 직무대리 주 사 주택관리과 보수계장 직무대리 불 명함.</p>	<p>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 건축과장 직무대리를 명함. 성 북 구 지방토목 장 석 호 기좌시보 지방토목기좌에 포함.</p>
<p>개발 1 과 지방행정 김 성 관 계획 계장 사무관 주택정비과 정비계장에 포함.</p>	<p>1 호봉을 급함. 성북구 수도 2 과장에 임함.</p>
<p>단속 과 지방행정 최 길 수 단속 계장 사무관 주택정비과 단속계장에 포함.</p>	<p>용 산 구 지방토목 전 완 규 기좌시보 지방토목기좌에 포함.</p>
<p>개발 2 과 지방행정 심 언 호 관리계장 사무관 주택개발과 관리계장에 포함.</p>	<p>1 호봉을 급함. 용산구 수도 2 과장에 임함.</p>
<p>동대문구 지방행정 김 성 길 주 사 보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</p>	<p>◎1976. 2.26 남부병원 지방보건 김 남 홍 기좌시보 지방수의사보에 임함.</p>
<p>성 북 구 지방행정 이 기 상 주 사 보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</p>	<p>10 호봉을 급함. 축산물 위생검사소 근무를 명함. 축 산 분 위생검사소 지방수의사 김 용 천 위생검사소 부직을 명함.</p>
<p>서대문구 지방행정 홍 석 형 주 사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</p>	<p>축산물 위생검사소 근무를 명함. 서울특별시 부이사관 김 태 수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 포함. 서울특별시 부이사관 한 백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 포함.</p>
<p>◎1976.2.24 건축지도과 지방건축 이 번 삼</p>	<p>서울특별시 부이사관 박 중 문 용산구청장</p>

<p>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포함.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부이사관 이인재 부이사관에 임함.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 포함. 서울특별시 민방위국 서기관 이영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.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부이사관 박용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 민방위과 서기관 이영식 지방서기관에 임함. 지하철본부 운영담당관 직무대리를 명함.</p>	<p>용산구 지방행정 최성원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, 2호의 규정에 외거 파면에 처함. 운수 3과 주사보 조문상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, 2호의 규정에 외거 전체에 처함.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 서대문구 서기보 이석진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, 2호의 규정에 외거 전체에 처함.</p>
<p>1976년 2월 26일 내 통 영</p>	<p>영등포구 지방행정 김영년 주사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, 2호의 규정에 외거 전체에 처함.</p>
<p>◎ 1976. 2.28</p>	<p>용산구 지방행정 김갑수 서기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, 2호의 규정에 외거 파면에 처함.</p>
<p>용산구 지방행정 김기홍 서기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, 2호의 규정에 외거 파면에 처함.</p>	<p>동대문구 지방행정 고판석 서기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, 2호의 규정에 외거 파면에 처함.</p>
<p>용산구 지방행정 김기홍 서기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, 2호의 규정에 외거 파면에 처함.</p>	<p>서대문구 지방행정 송제경 주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, 2호의 규정에 외거 전체에 처함.</p>

<p>처함.</p>	<p>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</p>
<p>감사담당관인 지방행정 권 운 식 주 사</p>	<p>6월에 처함.</p>
<p>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</p>	<p>세 정 과 지방행정 이 호 열 서 기 보</p>
<p>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</p>	<p>복직을 명함.</p>
<p>6월에 처함.</p>	<p>영등포구 근무를 명함.</p>
<p>마포구 근무를 명함.</p>	<p>◎ 1976. 3. 2</p>
<p>영등포구 지방행정 이 송 옥 주 사 보</p>	<p>지방토목 조 이 기 기원보시보</p>
<p>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</p>	<p>동대문구 근무를 명함.</p>
<p>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</p>	<p>초임을 급함.</p>
<p>6월에 처함.</p>	<p>지방토목 도 성 기 기원보시보</p>
<p>은명출장소 지방행정 정 성 섭 주 사 보</p>	<p>성북구 근무를 명함.</p>
<p>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</p>	<p>초임을 급함.</p>
<p>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</p>	<p>지방토목 김 경 수 기원보시보</p>
<p>6월에 처함.</p>	<p>도봉구 근무를 명함.</p>
<p>천호출장소 지방행정 박 상 암 주 사 보</p>	<p>초임을 급함.</p>
<p>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</p>	<p>지방토목 김 안 기 기원보시보</p>
<p>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</p>	<p>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</p>
<p>6월에 처함.</p>	<p>초임을 급함.</p>
<p>용산구 지방행정 정 재 교 주 사 보</p>	<p>지방토목 이 상 기 기원보시보</p>
<p>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</p>	<p>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.</p>
<p>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</p>	<p>초임을 급함.</p>
<p>6월에 처함.</p>	<p>지방토목 박 상 기 기원보시보</p>
<p>중 구 지방행정 이 안 형 서 기</p>	<p>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.</p>
<p>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</p>	<p>초임을 급함.</p>

<p>지방건축장성규 지원보시보 비상계획보좌관실 근무를 명함. 초임을 급함.</p> <p>지방건축이종택 지원보시보 성복구 근무를 명함. 초임을 급함.</p> <p>지방건축이한출 지원보시보 성복구 근무를 명함. 초임을 급함.</p> <p>지방건축박민경 지원보시보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 초임을 급함.</p> <p>지방건축허현 지원보시보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 초임을 급함.</p> <p>지방건축박병식 지원보시보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 초임을 급함.</p> <p>지방건축정희덕 지원보시보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. 초임을 급함.</p>	<p>농림진흥호백 지원보시보 마포구 근무를 명함. 초임을 급함.</p> <p>지방간호장영희 지원보시보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. 초임을 급함.</p> <p>지방간호송옥자 지원보시보 관악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 초임을 급함.</p> <p>지방약무어준수 지원보시보 도봉구보건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, 3 호의 규정에 외거 파면에 처함</p> <p>지방보건한상훈 지원보시보 용산구보건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, 3 호의 규정에 외거 파면에 처함.</p> <p>지방보건장순만 지원보시보 용산구보건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, 3 호의 규정에 외거 파면에 처함.</p>
<p>서울특별시</p>	